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2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서범수・박정하・성일종

백종헌 • 이헌승 • 고동진

이달희 • 유용원 • 김장겸

김위상 · 김대식 · 천하람

박성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을 연장하며, 분할청구의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3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 <u>10일</u> 의 휴가를	<u>30일</u>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③
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u>90</u>	<u>120</u>
<u>일</u> 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u>일</u>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u>1회</u> 에	④3 <u>회</u>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